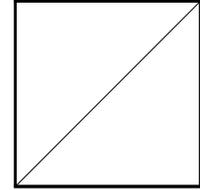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21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6. 27. (제 12 차)	

티에스텍(주)의 [개별, 연결]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소 영
제출 연월일	2022. 6. 27.

1. 의결주문

티에스텍(주)의 제24기(2015.1.1.~2015.12.31.)부터 제29기(2020.1.1.~2020.12.31.)까지의 [개별, 연결]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를 별첨과 같이 보고한다.

2. 제안이유

티에스텍(주)의 제24기(2015.1.1.~2015.12.31.)부터 제29기(2020.1.1.~2020.12.31.)까지의 [개별, 연결] 감사보고서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를 보고하고, 티에스텍(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티에스텍(주)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개별, 연결) ‘15년 9,905백만원, ‘16년 8,285백만원, ‘17년 6,239백만원, ‘18년 3,753백만원, ‘19년 2,010백만원, ‘20년 121백만원) ○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과소계상 ((개별, 연결) ‘15년~‘19년 7,582백만원, ‘20년 7,241백만원)
조치 내용*1,2,3,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회사 60.6백만원, 대표이사 ○○○ 6백만원, 대표이사 ○○○ 6백만원, 담당임원 ○○○ 6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 담당임원 ○○○ 해임(면직)권고 ○ 직무정지 6월(담당임원 ○○○)

※ ‘16.3.21.자로 퇴임한 위반행위 발생당시의 감사 ○○○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사실’을 통보(사실의 통지’로서 개별 금융업법령상 임원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퇴임이후 감사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하여 감사에 대한 조치는 없음

*1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높아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을 적용한 조치를 적용

*2 동기판단(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판단)

- 가.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중과실(‘15년~‘17년), 과실(‘18년~‘20년)
- 나.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과소계상 : 중과실

-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가중 및 감경 적용)
 - 기본조치의 가중 : 1단계 가중
 - 제24기('15년)부터 제28기('19년)까지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1단계 가중
 - 기본조치의 감경 : 해당 없음
- *4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으로서 부과조치안은 금융위에 별도 상정 예정임
 - 조치근거 : 「외부감사법」 제35조(과징금) 제1항, 제36조(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3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 *5 개별재무제표의 조치내용과 연결재무제표의 조치내용이 동일하여 지적연도 및 중요도가 큰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조치안을 적용함

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사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리결과(의결일 : '22.1.25.)

1) 보고내용

지적사항

-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개별, 연결) '15년 9,905백만원, '16년 8,285백만원, '17년 6,239백만원, '18년 3,753백만원, '19년 2,010백만원, '20년 121백만원)
-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개별, 연결) '15년~'19년 7,582백만원, '20년 7,241백만원)

조치내용

- 감사인 [OO회계법인('15년~'16년)]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 지정제외점수 40점

○ 감사인 [OO회계법인('17년~'20년)]

- 과징금(7.2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 지정제외점수 40점

*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으로서 부과조치안은 금융위에 별도 상정 예정임

○ 공인회계사 OOO(OOOOO)* : 주책임자 및 보조책임자, 담당이사

- 당해회사감사 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 OO회계법인에서 OO회계법인으로 소속 변경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①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관련하여

['15년~'17년]

(舊양정기준) “기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판단

(新양정기준) ① 행위 판단기준 :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및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정보의 중요성 판단기준 :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판단

['18년~'20년]

(舊양정기준)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판단

(新양정기준) ① 행위 판단기준 :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및 “그 밖의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② 정보의 중요성 판단기준 :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실**”로 판단

②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관련하여

(舊양정기준) “기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판단

(新양정기준) ① 행위 판단기준 :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및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정보의 중요성 판단기준 :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판단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높아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을 적용한 조치를 적용하여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하여 기본조치(중과실 II 단계)에서 **1단계 감경**(수정공시 조력)하여 조치(II→III), 감사인(○○회계법인)과 주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기본조치(중과실 III 단계)로 조치함

4. 참고사항

가. 제7차 감리위원회 심의필(2022.3.17.)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이 안전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붙임1)

(별지)

티에스텍(주)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티에스텍(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티에스텍(주)

- 대표이사 : 000,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소재지 : 00000 000 000 000 (000, 000000000000) 0000

000 [티에스텍(주) 대표이사]

- 생년월일 : 0000000
- 주소 : 000 0000 0000000 0, 0000 00000(0000, 000000000)

000 [티에스텍(주) 대표이사]

- 생년월일 : 0000000
- 주소 : 000 000 0000 00, 0000 00000(00000, 00000)

000 [티에스텍(주) 재무담당임원]

- 생년월일 : 0000000
- 주소 : 00 000 000 00000 00, 0000 00000(000, 0000 0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각 회계연도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손충당금과 자기자본 등을 과소(과대) 계상하였음

* 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중국 소재 소규모 회사로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아님

회계처리 위반 지적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4기 (‘15년)	제25기 (‘16년)	제26기 (‘17년)	제27기 (‘18년)	제28기 (‘19년)	제29기 (‘20년)
회사 재무상태표						
매출채권	3,718	3,969	3,743	4,014	4,157	1,889
선급금	7,116	7,116	7,116	7,116	7,116	-
합계	10,834	11,085	10,860	11,130	11,273	1,889
대손충당금 설정액	929	2,800	4,621	7,377	9,263	-*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	9,905	8,285	6,239	3,753	2,010	1,889
자기자본 과대	9,905	8,285	6,239	3,753	2,010	1,889
당기순이익 과대(과소)	9,905	△1,620	△2,046	△2,486	△1,743	△121

* ○○○○는 2020년 중 청산되어 관련 매출채권과 선급금 합계금액 9,263백만원은 제각처리됨

○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과소계상

- 회사가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손상차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와 ○○○○의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각 회계연도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증권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하였음

회계처리 위반 지적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4기 (‘15년)	제25기 (‘16년)	제26기 (‘17년)	제27기 (‘18년)	제28기 (‘19년)	제29기 (‘20년)
회사의 재무제표						
매도가능증권(○○○○)	7,241	7,241	7,241	7,241	7,241	7,241
매도가능증권(○○○○)	341	341	341	341	341	341
합계	7,582	7,582	7,582	7,582	7,582	7,582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	-	-	-	-	7,241*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과소	7,582	7,582	7,582	7,582	7,582	341
자기자본 과대	7,582	7,582	7,582	7,582	7,582	341
당기순이익 과대(과소)	7,582	-	-	-	-	△7,241

* ○○○○ 2020년 중 청산되어 회사는 2020년에 ○○○○ 매도가능증권 7,241백만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함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17의2, 6.32 및 6.A8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하 “회수가능액”이라 한다)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하며,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와 같이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보고기간종료일마다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업무규정」 제13조, 제22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1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를 위반하여 작성한 경우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경고, 주의, 회계처리기준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 등(이하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 별표 7의 조치 등의 기준(이하 “양정 기준”)에 따라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조치 등의 가중·경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 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르며,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과 제2항

-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별첨)

티에스텍(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제24기와 제25기 감사인과 공인회계사]

1. 감사인 지적사항

OO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은 회사의 제24기(2015.1.1.~2015.12.31.)와 제25기(2016.1.1.~2016.12.31.)의 개별재무제표를 감사함에 있어

□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개별) '15년 9,905백만원, '16년 8,285백만원)

회사가 장기간의 누적 손실(완전자본잠식) 및 실질적인 영업(생산)의 중단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이하 '○○○○')*와 ○○○○○○○○○○○(이하 '○○○○')*의 매출채권과 선급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각 회계연도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손충당금과 자기자본 등을 과소(과대) 계상하였음에도

* 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중국 소재 소규모 회사로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아님

감사인은 매출채권과 선급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회계처리 위반 지적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24기 ('15년)	제 25기 ('16년)
회사 재무상태표		
매출채권	3,718	3,969
선급금	7,116	7,116
합계	10,834	11,085
대손충당금	929	2,800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	9,905	8,285
자기자본 과대	9,905	8,285
당기순이익 과대(과소)	9,905	△ 1,620

□ 매도가능증권 손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개별) '15년과 '16년 7,582백만원)

회사가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손상차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와 ○○○○의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각 회계연도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증권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하였음에도

감사인은 매도가능증권 손상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회계처리 위반 지적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24기 ('15년)	제 25기 ('16년)
회사의 재무제표		
매도가능증권(○○○○)	7,241	7,241
매도가능증권(○○○○)	341	341
합계	7,582	7,582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	-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과소	7,582	7,582
자기자본 과대	7,582	7,582
당기순이익 과대(과소)	7,582	-

2. 조치내용

□ 감사인 : ○○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 지정제외점수 40점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 : 주책임자 및 보조책임자, 담당이사
- ○○회계법인 소속 변경, 통합조치로 생략함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①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관련하여

(舊양정기준) “기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판단

(新양정기준) ① 행위 판단기준 :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및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정보의 중요성 판단기준 :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판단

②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관련하여

(舊양정기준) “기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판단

(新양정기준) ① 행위 판단기준 :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및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정보의 중요성 판단기준 :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판단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높아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을 적용한 조치를 적용하여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하여 기본조치(중과실 II 단계)에서 1단계 감경(수정공시 조력)하여 조치함(II→III)

[제26기부터 제29기까지 감사인과 공인회계사]

1. 감사인 지적사항

○○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은 제26기(2017.1.1.~2017.12.31.)부터 제29기(2020.1.1.~2020.12.31.)까지 [개별·연결] 재무제표를 감사함에 있어

□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개별, 연결) ‘17년 6,239백만원, ‘18년 3,753백만원, ‘19년 2,010백만원, ‘20년 121백만원)

회사가 장기간의 누적 손실(완전자본잠식) 및 실질적인 영업(생산)의 중단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이하 ‘○○○○’)*와 ○○○○○○○○○○○(이하 ‘○○○○’)*의 매출채권과 선급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각 회계연도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손충당금과 자기자본 등을 과소(과대) 계상하였음에도

* 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중국 소재 소규모 회사로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아님

감사인은 매출채권과 선급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회계처리 위반 지적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6기 (‘17년)	제27기 (‘18년)	제28기 (‘19년)	제29기 (‘20년)
회사 재무상태표				
매출채권	3,743	4,014	4,157	1,889
선급금	7,116	7,116	7,116	-
합계	10,860	11,130	11,273	1,889
대손충당금	4,621	7,377	9,263	-*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	6,239	3,753	2,010	1,889
자기자본 과대	6,239	3,753	2,010	1,889
당기순이익 과대(과소)	△2,046	△2,486	△1,743	△121

* ○○○○가 2020년 중 청산되어 관련 매출채권과 선급금 합계금액 9,263백만원은 제각처리되었음

□ 매도가능증권 손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개별, 연결) '17년 ~'19년 7,582백만원, '20년 7,241백만원)

회사가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손상차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와 ○○○○의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각 회계연도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증권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하였음에도

감사인인 매도가능증권 손상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회계처리 위반 지적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6기 (‘17년)	제27기 (‘18년)	제28기 (‘19년)	제29기 (‘20년)
회사의 재무제표				
매도가능증권(○○○○)	7,241	7,241	7,241	7,241
매도가능증권(○○○○)	341	341	341	341
합계	7,582	7,582	7,582	7,582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	-	-	7,241*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과소	7,582	7,582	7,582	341
자기자본 과대	7,582	7,582	7,582	341
당기순이익 과대(과소)	-	-	-	△7,241

* ○○○○는 2020년 중 청산되어 회사는 2020년에 ○○○○ 매도가능증권 7,241 백만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함

2. 조치내용

□ 감사인 : ○○회계법인

- 과징금(7.2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 지정제외점수 40점

*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으로서 부과조치안은 금융위에 별도 상정 예정임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 : 주책임자 및 보조책임자, 담당이사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 ①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관련하여

[17년]

(舊양정기준) “기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판단

(新양정기준) ① 행위 판단기준 :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및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정보의 중요성 판단기준 :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판단

[18년~20년]

(舊양정기준)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판단

(新양정기준) ① 행위 판단기준 :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및 “그 밖의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② 정보의 중요성 판단기준 :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실**”로 판단

②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관련하여

(舊양정기준) “기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판단

(新양정기준) ① 행위 판단기준 :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및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정보의 중요성 판단기준 :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판단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높아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을 적용한 조치를 적용하여

감사인(○○회계법인)과 주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기본조치(중과실 III단계)로 조치함

(붙임1)

관 계 법 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 (회계처리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생략)

③ 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4.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상법」 제401조의2 및 제408조의2에 규정된 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1.~2. (생략)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5. (생략)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생략)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⑦ (생략)

제6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⑥ (생략)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6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생략)

제2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④ (생략)

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23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주권상장법인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⑦ (생략)

제35조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개시된 경우 위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제36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금융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장 여부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과징금이 제35조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④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업무의 위탁) ①~③ (생략)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이 조 제2항제15호 및 제16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회사, 관계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자료 중 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의 자료 제출 요구 업무
3. 법 제29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업무(제1호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

⑤~⑧ (생략)

제53조 (감사인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2. (생략)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영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감사인의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③ (생략)

제54조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예의 처분건의
 - 가. 등록취소
 - 나. 2년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
 2.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한다)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약속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 ②, ③ (생략)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6.16, 2005.6.29, 2010.5.27>

1. 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
 3.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경고 또는 주의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약속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 ② 증선위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조치의 수준,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 (조치기준) 증선위가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크기 등 중요도, 고의성의 유무 및 중과실의 정도에 따라 조치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때에는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 (조치의 가감 및 병과등) ①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가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 포함) 조치를 받고,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 ② 제53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2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③ (생략)
- ④ 증선위는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질적 특성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⑤, ⑥ (생략)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감리등의 착수) ①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생략)
2.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나. 재무제표 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과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다. 감리집행기관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회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8. (생략)
- ②~③ (생략)

제26조 (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감사인이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를 한도로 한다)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2년 이내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공인회계사가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나. 주권상장법인

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사를 담당했던 이사를 주책임자로 하고, 주책임자의 감사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이 조에서 "담당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별하여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⑧ (생략)

제27조 (조치등의 기준) ①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 등의 가중·경감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⑤ (생략)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⑦ (생략)

제28조 (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①~② (생략)

③ 감리집행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안전으로 부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2. 조치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직권재심에 관한 사항

④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안전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략)

제31조 (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등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③ (생략)

제32조 (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 (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들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8조 (위법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정 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 및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치등의 일시
2.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조치등의 내용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14. (생략)

제40조(위탁업무의 보고) ①~④ (생략)

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리등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내용을 지체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조치를 한 경우(제42조에 따른 재심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는 없으나 회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생략)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⑦, ⑧ (생략)

제42조 (위탁업무에 대한 사후통제)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심(再審)을 요구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하고 직접 조치할 수 있다.

제43조 (금전적 제재의 부과기준) 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부칙<제2019-13호,2019.4.3.> 제2조 (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6.17의2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2절 ‘유가증권’ 적용대상 금융자산은 제외)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 (1)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 (2)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6.32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하 “회수가능액”이라 한다)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보고기간종료일마다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한다. 손상차손금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6.A8 다음의 경우는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 (1)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경우,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 (2)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의 지연과 같은 계약의 실질적인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적 곤경과 관련한

- 경제적 또는 법률적인 이유 때문에 당초의 차입조건의 완화가 불가피한 경우
- (4) 유가증권발행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은 경우
 - (5) 과거에 그 유가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그 때의 손상사유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
 - (6)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그 유가증권이 시장성을 잃게 된 경우
 - (7) 표시이자율 또는 유효이자율이 일반적인 시장이자율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채무증권(예: 후순위채권, 정크본드)을 법규나 채무조정협약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
 - (8)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9) 기타 (1) 내지 (8)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심사감리본부
연락처	02-2100-2692	02-3149-0397